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72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이상식 · 채현일 · 양부남
임호선 · 권철승 · 복기왕
이개호 · 이정문 · 박지혜
부승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8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혐오표현”이란 성별, 종교, 장애, 인종, 국적, 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 명예훼손, 경멸, 비방, 폭력적 행위 촉구 등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를 말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초래한”을 “초래하거나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을 “발생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시위로”를 “시위의 소음·혐오표현 등으로”로 한다.

2. 신고장소에서 집회나 시위의 소음·혐오표현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제4항제2호 중 “하는”을 “하거나 혐오표현을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 제8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각각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혐오표현”이란 성별, 종교, 장애, 인종, 국적, 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 명예훼손, 경멸, 비방, 폭력적 행위 촉구 등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를 말한다.</u></p>
<p>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u></p>
<p>② (생략)</p> <p>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 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p>

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략)

⑥ (생략)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생략)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발
생활 -----

2. 제1호의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의 소음·협오표현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
-- 시위의 소음·협오표현 등
은-----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
----- 하거나 협
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

을 현저히 침해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